|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수출 퇴(면)세 신고방법 조정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61호수출 퇴(면)세 신고 오류와 의문점을 줄이고, 신고 및 심사비준 효율을 진일보 향상시켜 수출세금환급 진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수출 퇴(면)세 신고방법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기업의 수출화물노무 및 증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서비스(이하 ‘수출화물노무 및 서비스’)는 수출 퇴(면)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기 전, 현행 신고방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사전신고를 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신고증빙의 내용과 대응되는 관리부문 전자정보에 착오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규정된 퇴(면)세 신고증빙과 자료 및 정식신고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정식 신고할 수 있다.2. 세무기관은 기업의 수출 퇴(면)세 사전신고를 수리한 후, 즉시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해야 한다. 심사결과 퇴(면)세의 신고증빙과 상응되는 관리부문에 전자정보가 없거나 증빙 내용이 전자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증빙 정보의 입력 오류에 속할 경우, 정정 후 사전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2) ‘중국 전자항구 수출 퇴세 서브시스템’에서 수출화물통관서 확인처리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인증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처리를 완료한 후, 사전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3) 상술한 원인 이외에, 《수출기업 정보조회신청서》(첨부1 참조)를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상응하는 증빙관리부문의 전자정보 또는 증빙 내용과 전자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데이터 및 원시증빙을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정보조회에 협조해야 한다.3. 생산기업은 ‘면/저/퇴세’ 정식신고 수출판매액(본 공고 발효 이전에 이미 구방법에 따라 신고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수출판매액 불포함)에 근거하여 ‘면/저/퇴세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을 계산하고,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2)》 ‘면/저/퇴세방법 수출화물 공제불가매입세액’란 (제18란)과 《‘면/저/퇴세’ 신고총괄표》 ‘면/저/퇴세 면세불가/ 공제불가세액’란(제15란)에 기재한다.생산기업이 본 공고 발효 이전에 구방법에 따라 신고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수출화물노무 및 서비스는 본 공고 발효 이후 즉시 관련 증빙을 전부 수취하고 사전신고를 하며, 증빙이 완전히 갖춰지고 정보가 사전신고를 통과하여 착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면/저/퇴세’ 정식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정식신고 시, ‘면/저/퇴세액’만 계산하고, ‘면/저/퇴세 면세불가/ 공제불가세액’은 계산하지 않는다.4.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기업이 수출한 화물노무 및 서비스의 퇴(면)세 신고 증빙이 여전히 상응되는 관리부문에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내용이 전자정보 대조결과와 불일치하여 사전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수출 퇴(면)세 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신고서》(첨부2 참조) 및 전자데이터.(2) 퇴(면)세 신고증빙 및 자료.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기업이 제출한 퇴(면)세 증빙자료가 완전하고, 《수출 퇴(면)세 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신고서》 및 전자데이터와 증빙의 내용이 일치한 경우, 기업의 퇴(면)세 정식신고 시간은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퇴(면)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퇴(면)세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면세신고 또는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2]39호)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생산기업은 본 공고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면/저/퇴세’ 신고는 여전히 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6. 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국가세무총국의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퇴(면)세 신고 시 외화수금자료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등 문건 중 본 공고와 상충하는 내용은 폐지한다.첨부: 1. 수출기업 정보조회신청서（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476818/part/476852.xls） 2. 수출 퇴(면)세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신고서（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476818/part/476853.xls）국가세무총국 2013년 10월 15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出口退（免）税申报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61号为减少出口退（免）税申报的差错率和疑点，进一步提高申报和审批效率，加快出口退税进度，税务总局决定调整出口退（免）税申报办法，现公告如下：　　一、企业出口货物劳务及适用增值税零税率的应税服务（以下简称出口货物劳务及服务），在正式申报出口退（免）税之前，应按现行申报办法向主管税务机关进行预申报，在主管税务机关确认申报凭证的内容与对应的管理部门电子信息无误后，方可提供规定的申报退（免）税凭证、资料及正式申报电子数据，向主管税务机关进行正式申报。　　二、税务机关受理企业出口退（免）税预申报后，应及时审核并向企业反馈审核结果。如果审核发现申报退（免）税的凭证没有对应的管理部门电子信息或凭证的内容与电子信息不符的，企业应按下列方法处理：　　（一）属于凭证信息录入错误的，应更正后再次进行预申报；　　（二）属于未在“中国电子口岸出口退税子系统”中进行出口货物报关单确认操作或未按规定进行增值税专用发票认证操作的，应进行上述操作后，再次进行预申报；　　（三）除上述原因外，可填写《出口企业信息查询申请表》（见附件1）,将缺失对应凭证管理部门电子信息或凭证的内容与电子信息不符的数据和原始凭证报送至主管税务机关，由主管税务机关协助查找相关信息。　　三、生产企业应根据免抵退税正式申报的出口销售额（不包括本公告生效前已按原办法申报的单证不齐或者信息不齐的出口销售额）计算免抵退税不得免征和抵扣税额，并填报在当期《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二）》“免抵退税办法出口货物不得抵扣进项税额”栏（第18栏）、《免抵退税申报汇总表》“免抵退税不得免征和抵扣税额”栏（第15栏）。　　生产企业在本公告生效前已按原办法申报单证不齐或者信息不齐的出口货物劳务及服务，在本公告生效后应及时收齐有关单证、进行预申报，并在单证齐全、信息通过预申报核对无误后进行免抵退税正式申报。正式申报时，只计算免抵退税额，不计算免抵退税不得免征和抵扣税额。　　四、在退（免）税申报期截止之日前，如果企业出口的货物劳务及服务申报退（免）税的凭证仍没有对应管理部门电子信息或凭证的内容与电子信息比对不符，无法完成预申报的，企业应在退（免）税申报期截止之日前，向主管税务机关报送以下资料：　　（一）《出口退（免）税凭证无相关电子信息申报表》（见附件2）及其电子数据；　　（二）退（免）税申报凭证及资料。　　经主管税务机关核实，企业报送的退（免）税凭证资料齐全，且《出口退（免）税凭证无相关电子信息申报表》及其电子数据与凭证内容一致的，企业退（免）税正式申报时间不受退（免）税申报期截止之日限制。未按上述规定在退（免）税申报期截止之日前向主管税务机关报送退（免）税凭证资料的，企业在退（免）税申报期限截止之日后不得进行退（免）税申报，应按规定进行免税申报或纳税申报。　　五、符合《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12〕39号）第九条第（四）项规定的生产企业，不适用本公告，其免抵退税申报仍按原办法执行。　　六、本公告自2014年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12号）、《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企业申报出口货物退（免）税提供收汇资料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30号）等文件与本公告相冲突的内容同时废止。　　附件：1.出口企业信息查询申请表（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476818/part/476852.xls）　　2.出口退（免）税凭证无相关电子信息申报表（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476818/part/476853.xls）国家税务总局2013年10月15日 |